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72
----------	------

제출년월일 : 2014. 11. 20.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 금년에 조성 완료하여 2015년에 개장 예정인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완화(안 제5조).
- 나. 공설장사시설 설치면적, 사용기간 등 사용기준 정비(안 제6조, 제7조)
- 다. 장사시설(자연장지)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안 제8조)
- 라.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통합 (안 제17조 내지 제22조)
- 마. 공설장사시설 위탁운영 방안 마련 (안 제24조).
- 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문정비(전문)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4. 9. 04. ~ 9. 24.(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현행조례(전문)
- 방침결정문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 안치 또는 자연장할 수 있도록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과거에 설치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무연분묘묘역”이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4.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5. “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뿐만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8. “공설장사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유지·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제17조에 따라 지급하는 장

려금을 말한다.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망일 현재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자녀(다만,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무연고 행려사망자
 3.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거주한 자
 4. 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재난, 재해 등)로 인한 사망자
 5. 시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6.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7.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한정함)
 8.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반환된 봉안시설 및 가족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의 부부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자연장지 중 가족장은 3명부터 8명까지(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모에 한정함)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신청 시 사용할 가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사용 허가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안치·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자가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골시설은 무료로 한다.

- ②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 중 반환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한다. 다만, 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개인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를 50퍼센트 가산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50퍼센트 감면한다.
- ⑤ 연장허가 시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중 한 명이라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석과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②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비석 등 그 크기 등은 법 제1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

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에는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의 일련번호와 사망자의 성명을 기재한 명폐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타인에게 양도·매매·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분묘의 면적제한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분묘, 비석 또는 명폐 등을 설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무연분묘(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묘역에 안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6조 및 제9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 및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망자 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의료·자활·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
 2.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묘적부의 비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묘적부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곳

제3장 화장장려금 지급

제17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지급기준) 제17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제19조(신청방법) ① 제17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제22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권한의 위임 등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한 장려금 신청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식품위생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식품위생과장 이 용 호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중위생담당 이 영 순
	담당자 성명·전화	박 은 영 (행정 2834)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3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 청	위 치	면 적(m^2)
꽃빛공원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	19,240

2. 공설묘지

명 청	위 치	면적(m^2)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분묘)

(단위 : 원)

구 분	1기당 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공설공원 묘 지	6.6m ² 이 하	656,000	현행 금액징수	100% 가산징수	매장
공설묘지	6.6m ² 이 하	188,000			매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m ² 이 하	108,000			화장 유골 매장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단위 : 원)

구 分	사용료 및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개인단	367,000	현행 금액징수	100% 가산징수	화장 유골 안치
부부단	555,500			

3. 공설공원묘지 자연장지

(단위 : 원)

구 分	유 형	사용료 및 관리비	비고
수목장	개인장	626,000	유골 1구
	부부장	1,174,000	유골 2구
	가족장 (3구부터 8구까지)	4,697,000	수목 1주
잔디장	개인장	508,000	유골 1구
	부부장	938,000	유골 2구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分		사 용 기 간							비 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반환 금액	사용료 및 관리비	60%	50%	40%	30%	20%	10%	미 지급	원단위 절사

* 자연장의 경우 시설 사용 중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9조 관련)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			
지급은행		계좌번호				
화장내역	성명		생년월일	.	사망일	.
	개장장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화장일	.	화장장소			
<p>「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안산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장신고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사망자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1부 4.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제22조 관련)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 5. (생략) 6.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설봉안시설”이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8.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준용한다. 9. (생략) <p>〈신 설〉</p>	<p>제1조(목적) · 제4조 및 23조에 따라 안산시과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하여</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태로 매장, 안치 또는 자연장할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한 구역을 2. ~ 5. (현행과 같음) 6. 뿌려 장사하는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8. (현행 제9호와 같음) 9.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제17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3조~제4조 (생략)</p>
<p>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망인의 연고자 중 상주(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최근친 연고자)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 6. (생략) <p>〈신설〉</p>	<p>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자녀(다만,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에 2. ~ 6. (현행과 같음) 7.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한정함) 8. (현행 제7호와 같음)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반환된 봉안시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또는 봉안시설의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신설>

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③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골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생략)
1. (생략)

② 두고 한정하여
③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반환된 봉안시설 및 가족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합장분묘,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의 부부장.....
.....
.....
③ 자연장지 중 가족장은 3명부터 8명까지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모에 한함)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신청 시 사용할 가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의 유골 1구당 접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사용허가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안치·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망자가
.....
.....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
.....
산골시설은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p>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 중 반환하는 경우 별표3에 <u>의한</u>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 한다. <신설></p>	<p>2. 따른 다만, 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③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개인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허가에 한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 징수한다. ⑤ 연장허가 시 <u>연고자 중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u> 중 1인이라도 <u>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u></p>	<p>③ 관리비를 50퍼센트 가산한다. ④ 삭 제 50퍼센트 감면한다. ⑤ 사망자의 (다만, 사망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p>
<p>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u>공설묘지에 있어서는</u>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의 일련번호와 <u>망인의</u> 성명을 기재한 명패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생략)</p>	<p>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설묘지에 ④ 사망자 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생략) 1.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u>아니하였을 때</u> 2. 제6조에 따른 분묘의 면적제한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분묘, 비석 또는 명패 등을 설치하였을 때 3. ~ 4. (생략)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② (생략)</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아니한 경우 2. 설치한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5.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u>사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u>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개장할</p>
<p>② ~ ④ (생략)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생략) 1. <u>망인 또는 연고자(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u>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의한</u> 수급자인 경우(의료·자활·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 2. <u>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경우</u> 3. (생략) ②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u>사망자 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u> 따른 2. <u>사망자가</u> 따른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제13조 ~ 제14조(생략)	제13조 ~ 제14조(현행과 같음)
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장사시설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중·장기수급계획 ② 필요한
제1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봉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2. (생략)	제1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제18조(지급기준) 제17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제19조(신청방법) ① 제17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제20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제2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신설>	제22조(지급대장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위임) (생략)	제23조(권한위임) (현행 제17조와 같음)

<신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3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칭	위치	면적(m ²)
꽃빛공원	단원구 와동 37-2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부곡동 산12	19,240

2. 공설묘지

명칭	위치	면적(m ²)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3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칭	위치	면적(m ²)
꽃빛공원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	19,240

2. 공설묘지

명칭	위치	면적(m ²)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폐장)

구 분	1기당 면적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연장신청 시		
					관내	관외	
공설공원 묘 지	6.6m ² 이 하	656,000	253,000	403,000			폐장
공설묘지	6.6m ² 이 하	188,000	161,000	27,000	현행 금액징수	100% 가산징수	폐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m ² 이 하	108,000	68,000	40,000			화장 유골 매장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연장신청 시		
				관내	관외	
개인단	367,000	282,000	85,000	현행 금액징 수	100% 가산징 수	화장 유골 안치
부부단	555,500	423,000	132,500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분묘)

(단위 : 원)

구 分	1기당 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공설공원 묘 지	6.6m ² 이 하	656,000			폐장
공설묘지	6.6m ² 이 하	188,000			폐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m ² 이 하	108,000			화장 유골 매장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단위 : 원)

구 分	사용료 및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개인단	367,000			화장 유골 안치
부부단	555,500			

3. 공설공원묘지 자연장지

(단위 : 원)

구 分	유 형	사용료 및 관리비	비고
		개인장	
수목장	부부장	1,174,000	유골 2구
	가족장 (3구부터 8구까지)	4,697,000	수목 1주
잔디장	개인장	508,000	유골 1구
	부부장	938,000	유골 2구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分	사 용 기 간							비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 만	3년 이상 6년 미 만	6년 이상 9년 미 만	9년 이상 12년 미 만	12년 이상 14년 미 만	14년 이상	
반환 금액	사용료 및 관리비	60%	50%	40%	30%	20%	10%	마지금 원단위 점사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分	사 용 기 간							비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 만	3년 이상 6년 미 만	6년 이상 9년 미 만	9년 이상 12년 미 만	12년 이상 14년 미 만	14년 이상	
반환 금액	사용료 및 관리비	60%	50%	40%	30%	20%	10%	마지금 원단위 점사

* 자연장의 경우 시설 사용 중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제19조관련)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		
지급은행		계좌번호			
화 장 내 역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개장장소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화장일	화장장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1. 개장신고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선청인이 사망자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1부
4. 통상사본 1부 |
|--------|--|

〈설 설〉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제22조 관련)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72
------------	------

제안년월일 : 2015년 03월 11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일부 수정하고, 봉안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 조문의 내용과 제목에 맞게 일부 조항을 신설(제8조 6항)
- 봉안시설의 설치 장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나타내도록 수정함(별표2)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목적) 중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를 “에서 위임한 사항과”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를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치”를 “봉안”으로 하고, 제11호제12호를 제12호제13호로 하며, 제11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장”이란 사망자와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모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지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설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교정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7호 중 “안치”를 “봉안”으로 “직계자녀”를 “직계존·비속”으로 수정하며, 제3항“안치”를 “봉안”으로 한다.

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하고, 제1항 “시설별 사용기간”을 “설치기간”으로 제2항“안치”를 “봉안”으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6항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제18조 내지 제26조로 하고, 제17조(봉안시설의 설

치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별표1]과 영 제18조제1항[별표3]에 따라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22조 제1호 중(원안의 21조 제1호) “지원금”을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2015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한다.

[별표1][별표2][별표3]의 “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로 한다.

[별표2]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및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 제4조 및 23조에 따라 안산시과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하여</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공설묘지”란 과거에 설치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하며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설공원묘지 형태로 재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묘지를 말한다. “무연분묘묘역”이란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유골을 화장하여 매장하는 묘역을 말한다.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뿐리는 시설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형태로 매장, <u>안치</u> 또는 자연장할 수 있도록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뿐려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설공원묘지”란 개선된 형태로 매장, <u>봉안</u> 또는 자연장할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7. “사설봉안시설” 이란 개인, 가족, 종종·문종, 종교 단체, 재단법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삭제〉	
8.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를 준용한다.	7.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7. (개정안과 같음)
9. “공설장사시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유지·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8. (현행 9호와 같음)	8. (개정안과 같음)
〈신설〉	9.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9. (개정안과 같음)
〈신설〉	10.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0. (개정안과 같음)
	〈신설〉	11. “가족장”이란 사망자와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모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장지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1.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개정안 11호와 같음)
〈신설〉	1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제17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13. 제18조에 따라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명칭과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개정안과 같음)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생략) 1.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u>망인의 연고자</u> 중 상주(장남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무연고 행려사망자 3.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거주한 자 4. 시에서 발생한 대형사고(재난, 재해 등)로 인한 사망자 5. 시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6.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자녀(다만,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가 시에 ……………… ………… ……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신설>	7.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을 <u>안치</u> 하려는 자 중 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한정함)	7.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을 <u>봉안</u> 하려는 자 중 시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7.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산골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 시설 중 반환된 <u>봉안시설</u> 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u>안치</u> 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반환된 <u>봉안시설</u> 및 가족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u>봉안</u> 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반환된 <u>봉안시설</u> 및 가족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생략)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면적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 (개정안과 같음)

<p>② 제1항에 따른 합장분묘 또는 봉안시설의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② 합장분묘, 봉안시설의 부부단 또는 자연장지의 부부장.....</p> <p>③ 자연장지 중 가족장은 3명부터 8명까지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및 부모에 한함)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신청 시 사용할 가족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공설공원묘지 내 자연장지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분묘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2.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p>	<p>제7조(설치기간) ①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설치기간은</p> <p>2. 설치기간은 설치기간 01</p>
<p>② 제1항에 따른 연장허가 시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사용 허가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안치·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부부단·부부장·가족장의 경우 사용 허가한 인원 중 마지막으로 매장·봉안·자연장한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p>
<p><신설></p>	<p>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연장 사용료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신설></p>	<p>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망인이</u>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⑤ <u>사망자가</u></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u>산골시설의 사용</u>은 무료로 한다.</p>	<p>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u>산골시설은</u></p>	<p>제8조 (개정안과 같음)</p>
<p>② (생략) 1. (생략) 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 중 반환하는 경우 별표3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한다. <신설></p>	<p>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따른</u> <u>다만</u>, <u>자연장의</u>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개인분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p>	<p>③ <u>관리</u> 비를 50퍼센트 가산한다.</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환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최초허가에</u> <u>한하여</u> 사용료 및 관리비를 50% 감면 징수한다.</p>	<p>④ <u>삭 제</u>50퍼센트 감면한다.</p>	<p>④ (개정안과 같음)</p>
<p>⑤ 연장허가 시 <u>연고자</u> 중 배우자, 자녀, 부모(<u>다만</u> <u>망인이</u>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중 1인이라도 <u>시에</u>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p>	<p>⑤ <u>사망자의</u> <u>(다만,</u> <u>사망자가</u> <u>시에</u> <u>주민</u> <u>등록을</u> <u>두고</u>.....</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① (생략)</p>	<p>제9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같음)</p>	<p>제9조 (개정안과같음)</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에 있어서는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설치할 수 있다.</p> <p>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은 시장이 정한 형태의 일련번호와 <u>망인</u>의 성명을 기재한 명패와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p> <p>⑤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설묘지에</u> 는.....</p> <p>④ <u>사망자</u>.....</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생략)</p> <p>1.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u>아니하였을 때</u></p> <p>2. 제6조에 따른 분묘의 면적제한기준이나 제9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기준을 위반한 분묘, 비석 또는 명패 등을 <u>설치하였을 때</u></p> <p>3. ~ 4. (생략)</p> <p>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p> <p>② (생략)</p>	<p>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1. <u>아니한 경우</u></p> <p>2. <u>설치한 경우</u></p> <p>3. ~ 4. (현행과 같음)</p> <p>5. <u>조례를 위반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u>사체</u> 또는 <u>유골</u>을 <u>개장</u>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1조(개선 및 개장명령) ① <u>개장</u> 할</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생략)</p> <p>1. <u>망인</u> 또는 <u>연고자</u>(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u>의한</u> 수급자인 경우(의료·자활·교육특례자는 제외한다)</p> <p>2. <u>망인이</u>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u>의한</u> 국가유공자인 경우</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u>사망자</u> 또는 <u>연고자</u> 중 <u>최우선</u> <u>순위자가</u> <u>따른</u></p> <p>2. <u>사망자가</u> <u>따른</u></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묘적부의 비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묘적부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13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14조 (현행과 같음)</p>	<p>제14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 대한 장사시설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u>소요되는</u>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u>중·장기수급계획</u>..... ② <u>필요한</u></p>	<p>제15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봉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2. (생략)</p>	<p>제1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1. ~ 2. (현행과 같음)</p>	<p>제16조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제1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11조 관련)과 [별표3](제18조제1항 관련)에 따라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p>

		<p>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골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신설>	<p>제3장 화장장려금 지급 제17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한다.</p>	<p>제3장 화장장려금 지급 제18조 (개정안과 같음)</p>
<신설>	제18조(지급기준) 제17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제19조 (개정안과 같음)
<신설>	<p>제19조(신청방법) ① 제17조에 따라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제20조 (개정안과 같음)
<신설>	<p>제20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p> <p>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제21조

<p><신설></p>	<p><u>제21조(제외대상)</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령에 따라 <u>지원금</u>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p><u>제22조</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원</u>을 받아
<p><신설></p>	<p><u>제22조(지급대장 비치·관리)</u>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u>제23조</u> (개정안과 같음)</p>
<p>제17조(권한위임) (생략)</p>	<p>제4장 권한의 위임 등 <u>제23조(권한위임)</u> (현행 제17조와 같음)</p>	<p><u>제24조</u> (개정안과 같음)</p>
<p><신설></p>	<p><u>제24조(위탁운영)</u>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p>	<p><u>제25조</u> (개정안과 같음)</p>
<p>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25조(시행규칙)</u> <u>시행에 필요한</u></p>	<p><u>제26조</u> (개정안과 같음)</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산시 화장장</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산시 화장장</p>

	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한 장려금 신청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신청한 장려금 신청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p>[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3조 관련)</p> <p>1. 공설공원묘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청</th> <th>위 치</th> <th>면 적(m^2)</th> </tr> </thead> <tbody> <tr> <td>꽃빛공원</td> <td>단원구 와동 37-2</td> <td>158,072</td> </tr> <tr> <td>하늘공원</td> <td>상록구 부곡동 산12</td> <td>19,240</td> </tr> </tbody> </table> <p>2. 공설묘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청</th> <th>위 치</th> <th>면적(m^2)</th> </tr> </thead> <tbody> <tr> <td>군자공설묘지</td> <td>단원구 선부동 산3</td> <td>15,868</td> </tr> <tr> <td>선부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선부동 산59</td> <td>8,231</td> </tr> <tr> <td>화정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화정동 산116-1</td> <td>48,000</td> </tr> <tr> <td>팔곡동 공설묘지</td> <td>상록구 팔곡동 산42</td> <td>4,463</td> </tr> <tr> <td>사사동 공설묘지</td> <td>상록구 사사동 산23</td> <td>7,710</td> </tr> <tr> <td>대부북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북동 산54</td> <td>6,744</td> </tr> <tr> <td>대부동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동동 산281</td> <td>3,967</td> </tr> <tr> <td>선감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선감동 산130-1</td> <td>4,679</td> </tr> <tr> <td>대부남동 1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td> <td>10,489</td> </tr> <tr> <td>대부남동 2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131</td> <td>8,061</td> </tr> <tr> <td>대부남동 3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103</td> <td>7,869</td> </tr> <tr> <td>대부남동 4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360</td> <td>6,790</td> </tr> <tr> <td>대부남동 5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369</td> <td>8,046</td> </tr> <tr> <td>풍도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풍도동 산 207</td> <td>22,711</td> </tr> </tbody> </table>	명 청	위 치	면 적(m^2)	꽃빛공원	단원구 와동 37-2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부곡동 산12	19,240	명 청	위 치	면적(m^2)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p>[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제3조 관련)</p> <p>1. 공설공원묘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청</th> <th>위 치</th> <th>면 적(m^2)</th> </tr> </thead> <tbody> <tr> <td>꽃빛공원</td> <td>단원구 순환로 390(와동)</td> <td>158,072</td> </tr> <tr> <td>하늘공원</td> <td>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td> <td>19,240</td> </tr> </tbody> </table> <p>2. 공설묘지</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 청</th> <th>위 치</th> <th>면적(m^2)</th> </tr> </thead> <tbody> <tr> <td>군자공설묘지</td> <td>단원구 선부동 산3</td> <td>15,868</td> </tr> <tr> <td>선부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선부동 산59</td> <td>8,231</td> </tr> <tr> <td>화정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화정동 산116-1</td> <td>48,000</td> </tr> <tr> <td>팔곡동 공설묘지</td> <td>상록구 팔곡동 산42</td> <td>4,463</td> </tr> <tr> <td>사사동 공설묘지</td> <td>상록구 사사동 산23</td> <td>7,710</td> </tr> <tr> <td>대부북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북동 산54</td> <td>6,744</td> </tr> <tr> <td>대부동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동동 산281</td> <td>3,967</td> </tr> <tr> <td>선감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선감동 산130-1</td> <td>4,679</td> </tr> <tr> <td>대부남동 1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td> <td>10,489</td> </tr> <tr> <td>대부남동 2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131</td> <td>8,061</td> </tr> <tr> <td>대부남동 3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103</td> <td>7,869</td> </tr> <tr> <td>대부남동 4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360</td> <td>6,790</td> </tr> <tr> <td>대부남동 5공설묘지</td> <td>단원구 대부남동 산369</td> <td>8,046</td> </tr> <tr> <td>풍도동 공설묘지</td> <td>단원구 풍도동 산 207</td> <td>22,711</td> </tr> </tbody> </table>	명 청	위 치	면 적(m^2)	꽃빛공원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	19,240	명 청	위 치	면적(m^2)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명 청	위 치	면 적(m^2)																																																																																																											
꽃빛공원	단원구 와동 37-2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부곡동 산12	19,240																																																																																																											
명 청	위 치	면적(m^2)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명 청	위 치	면 적(m^2)																																																																																																											
꽃빛공원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158,072																																																																																																											
하늘공원	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	19,240																																																																																																											
명 청	위 치	면적(m^2)																																																																																																											
군자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3	15,868																																																																																																											
선부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부동 산59	8,231																																																																																																											
화정동 공설묘지	단원구 화정동 산116-1	48,000																																																																																																											
팔곡동 공설묘지	상록구 팔곡동 산42	4,463																																																																																																											
사사동 공설묘지	상록구 사사동 산23	7,710																																																																																																											
대부북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6,744																																																																																																											
대부동동 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3,967																																																																																																											
선감동 공설묘지	단원구 선감동 산130-1	4,679																																																																																																											
대부남동 1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10,489																																																																																																											
대부남동 2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8,061																																																																																																											
대부남동 3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7,869																																																																																																											
대부남동 4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6,790																																																																																																											
대부남동 5공설묘지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8,046																																																																																																											
풍도동 공설묘지	단원구 풍도동 산 207	22,711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매장)

구 분	1기당 면적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연장신청 시 관내 관외	
공설공원 묘 지	6.6㎡ 이 하	656,000	253,000	403,000		매장
공설묘지	6.6㎡ 이 하	188,000	161,000	27,000	현행 금액징수 가산징수	매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 이 하	108,000	68,000	40,000		화장 유골 매장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구 분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연장신청 시 관내 관외	
개인단	367,000	282,000	85,000	현행 금액징수 가산징 수	화장 유골 안치
부부단	555,500	423,000	132,500		

3. 신설

[별표2]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분묘)

구 分	1기당 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공설공원 묘 지	6.6㎡ 이 하	656,000			매장
공설묘지	6.6㎡ 이 하	188,000			매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 이 하	108,000			화장 유골 매장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구 分	사용료 및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개인단	367,000			화장 유골 안치
부부단	555,500			

3. 공설공원묘지 자연장지

구 分	유 형	사용료 및 관리비	비고
수목장	개인장	626,000	유골 1구
	부부장	1,174,000	유골 2구
	가족장 (3구부터 8구까지)	4,697,000	수목 1주
잔디장	개인장	508,000	유골 1구
	부부장	938,000	유골 2구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8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분묘)

구 分	1기당 면적	납부금액(원)				비고
		계	사용료	관리비	연장신청 시 관내 관외	
공설공원 묘 지	6.6㎡ 이 하	656,000	253,000	403,000		매장
공설묘지	6.6㎡ 이 하	188,000	161,000	27,000		매장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0.25㎡ 이 하	108,000	68,000	40,000		화장 유골 매장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구 分	계	사용료	관리비	연장신청 시		비고
				관내	관외	
개인단	367,000	282,000	85,000			화장 유골 안치
부부단	555,500	423,000	132,500			

3. 공설공원묘지 자연장지

구 分	유 형	사용료 및 관리비	비고
수목장	개인장	626,000	유골 1구
	부부장	1,174,000	유골 2구
	가족장 (3구부터 8구까지)	4,697,000	수목 1주
잔디장	개인장	508,000	유골 1구
	부부장	938,000	유골 2구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分		사 용 기 간							비 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반환 금액	사용료 및 관리비	60%	50%	40%	30%	20%	10%	미지급	원단위 결사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分		사 용 기 간							비 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 만	3년 이상 6년 미 만	6년 이상 9년 미 만	9년 이상 12년 미 만	12년 이상 14년 미 만	14년 이상	
반환 금액	사용료 및 관리비	60%	50%	40%	30%	20%	10%	미지급	원단위 결사

※ 자연장의 경우 시설 사용 중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分		사 용 기 간							비 고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 만	3년 이상 6년 미 만	6년 이상 9년 미 만	9년 이상 12년 미 만	12년 이상 14년 미 만	14년 이상	
반환 금액	사용료 및 관리비	60%	50%	40%	30%	20%	10%	미지급	원단위 결사

※ 자연장의 경우 시설 사용 중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